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제품의 광고 시 신고 또는 승인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및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나.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 위함

- 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
칙 제34조제2항 개정)
- 라.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마.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
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환경
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

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제품명, 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효과·효능(제5조제5항)을 “효과·효능을 광고하려는 경우 제5조제5항”으로,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을 “기재된 효과 효능에 한정된”으로 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표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43조제4호 중 “관련”을 “시장감시 및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3년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환경부령 제9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표시·광고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신고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제8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제

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조 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 조 · 수 입	☐ 제 조 ☐ 수 입	품 목
	제 품 명		용 도
	제 형		중 량 · 용 량 · 매 수
	제 조 국 명 (수입의 경우)		제 조 회 사 명 (수입의 경우)
	신 고 번 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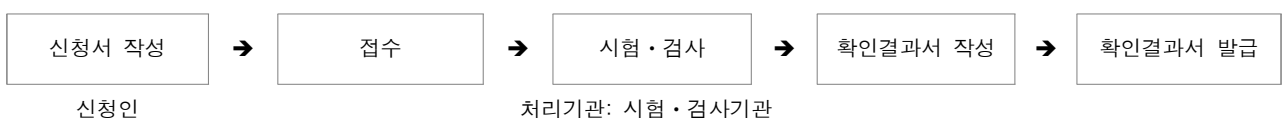
시험 ·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지정·고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작성방법

1.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행번호		접수번호
확인 완료일		접수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 제품	제조 ·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 · 용량 · 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 환경조건: 온도 () °C, 습도 () % R.H.

검사 구분	판정	부적합 사항	비고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기술책임자: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이
이

시험 · 검사기관

직인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위 판정을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2. 31.>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 품유형				
	순도 범위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국외 제조사(제조원) 정보, 제조원 소재지 및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조 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 ----- --- 법 제10조제8항-----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 ----- ----- ----- -----			

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
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3. (생 략)

② ~ ④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이 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
물질”이라 한다)로서 법 제18
조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

-----.

1. 기존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생략)

3. 제품의 효과·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표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

-----.

1. 제품명, 제품의 종류 및 안전 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현행과 같음)

3. ---- 효과·효능을 광고하려는 경우 제5조제5항-----

-- 기재된 효과 효능에 한정된 -----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48조에 따른 <u>관련</u> 단체 등과의 협력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시장감시</u> <u>및 관련</u> ----- --
--	--